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85
----------	-------

발의연월일 : 2025. 8. 26.

발 의 자 : 송기헌 · 김영진 · 한병도
문진석 · 윤종균 · 주철현
허영 · 박홍배 · 안태준
백승아 · 복기왕 의원
(11인)

제안이유

3D지도 등 공간정보는 자율주행, 스마트도시 등 국토교통분야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핵심 정보로써 정보이용자에게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공간정보 제공 시에는 국내 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에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보안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간정보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제공 공간정보를 확대함(안 제34조제2항).

나. 관리기관이 보유한 보안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35조).

다. 관리기관의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중복적인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1) 보안심사를 받은 지 1년 이내 관리기관을 달리하여 보안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심사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함

2) 보안심사 전문기관에 대하여 종전에는 관리기관별로 지정하던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일원화함

라.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6 신설).

마.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2 신설 및 제38조의3).

바.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에 대한 보안처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기준을 마련함(안 제40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3, 제35조의4제1항 및 제35조의5제1항에서 같다)의”를 “관리기관의”로 한다.

제35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의 제정·시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기본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원 및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3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보안심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종전에 보안심사를 받은 관리기관이 아닌 관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종전에 받은 보안심사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3제1항 중 “관리기관의 장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지정할”을 “지정하여 운영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소관 업무 운영상 별도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리기관의”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로 한다.

제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6(보안처리 등) ①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위장·삭제·흐림처리 등 필요한 조치(이하 “보안처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중 국방부장관이 보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시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시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간정보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이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검토(이하 “보안성 검토”라 한다)하고 보안처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및 보안처리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안처리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를 제38조의3으로 하고,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의3(종전의 제38조의2) 중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형법」 제127조 및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민간위원
2. 제35조의3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의 임직원
3. 제38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

제40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5조의6에 따른 보안처리를 하지 않고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관리기관이 지정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은 제3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생략)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u>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3항, 제35조의2제1항, 제35조의3, 제35조의4제1항 및 제35조의5제1항에서 같다)의</u>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2. (생략) ③ ④ (생략)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관리기관의</u> ----- ----- ----- ----- ----- ----- ----- ----- -----.
제35조(보안관리) ① ② (생략) <u><신설></u>	제35조(보안관리)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u>

<u><신 설></u>	<u>의 제정·시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u>
<u><신 설></u>	<u>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기본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u>
<u><신 설></u>	<u>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원 및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
제35조의2(보안심사) ① (생략)	제35조의2(보안심사)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보안심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종전에 보안심사를 받은 관리기관이 아닌 관리기관에</u>

② (생 략) 제35조의3(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u>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u> <u><신 설></u>	<u>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종전에 받은 보안심사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5조의3(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u>국토교통부장관은</u> ----- ----- ----- ----- -----지정하여 운영할-----. <u>다만, 중앙행정기관 소관 업무 운영상 별도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u> ② <u>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중</u>
---	---

②·③ (생략)

제35조의4(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후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신설>

양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35조의4(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의6(보안처리 등) ①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위장·삭제·흐림

처리 등 필요한 조치(이하 “보안처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중 국방부장관이 보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시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시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간정보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이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검토(이하 “보안성 검토”라 한다)하고 보안처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및 보안처리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공간정

<신 설>

보 보안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안처리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권한의 위임 ·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u>제38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u><신 설></u>	<u>한다.</u> <u>제38조의3(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u> -----. 1. 제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민간위원 2. 제35조의3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의 임직원 3. 제38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 제40조(벌칙)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35조의6에 따른 보안처리를 하지 않고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한 자
---	---